

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

(의안번호 제457호)

심사보고서

1997. 12. 23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2. 13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7. 12. 16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12. 23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로가 많은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하고 앞으로 숨은 세원발굴과 군재정 확보를 기하는 기쁨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포상금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및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함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도록 함.(안 제2조)

나. 포상금 지급은 징수세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함.(안 제3호)

다. 제납액 및 숨은세원 발굴 과정대장을 비치 기록하도록 함.(안 제4조)

라. 읍면장은 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.(안 제5조)

마. 포상금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년2회 지급하도록 함.(안 제6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숨은 세원발굴과 제납세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은 세입증대에 대한 의욕고취와 군재정 확충에 일조함은 물론 건전세정 운영에 기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,

○ 경상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등 상위법령에 배치된 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시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관련조례 제정후 징수포상금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는데 예산을 선 편성 확보한 사유는

● 답 : 행정절차 시행이 잘못 되었으며 금후 시정하겠음.

○ 문 : 징수포상금 민간인에 대한 홍보계획은

● 답 : 소가야소식지, 유선방송자막, 리동영프방송을 최대한 활용할 것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7. 12.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